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594
------------	-----

2019년 4월 22일  
교 통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9년 4월 3일

다. 상정일자

-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교통위원회(2019년 4월 22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고흥석 도시교통실장)

가. 제안이유

-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교통문화교육원의 이용료를 감면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교통문화교육원의 이용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안 제9조제5항)

- 둘 이상의 이용료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함(안 제9조제6항)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등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19. 2. 21. ~ 3. 13.

- 제출의견 : 의견없음

##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동수)

### 가. 개 요

- 동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하 “제로페이”라 한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로페이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교통문화교육원의 이용료를 10% 범위 내에서 감면하되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도록 하는 것임

### 나. 검토 의견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는 서울시가 관련 법<sup>1)2)</sup>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교육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고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교통회관이 위탁 운영<sup>3)</sup>할 수 있도록 한 공공시설로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문화교육원을 이용하는 자가 제로페이를 이용료를 결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0% 범위에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카드 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 위·수탁 협약서(2017.5.30.)

점에서 필요하고, 제로페이 이용자에 대한 한시적인 이용료 감면 정책을 통해 제로페이 이용 저변확대 및 결제수단 다양화, 시민에 대한 이용요금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공공시설 이용자에 대한 제로페이 활성화를 통해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되는 면이 있음
- 다만, 현행 조례 제9조제3항 및 제4항 등에 따라<sup>4)</sup> 운수종사자 및 그 직계가족, 경로·장애인·유공자·학생 등은 이미 15~50% 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할인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별첨 참고)

“제로페이 이용자에게 10% 범위 내에서 감면하되 둘 이상의 감면 사유가 있을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조례 개정내용은 시설 이용자에 대한 제로페이 이용 유인책이 되지 못할 개연성이 클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제로페이 결제 시스템 구축 기간을 고려할 때 이용료를 실제로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에 불과하여 조례 개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음

---

4) 제9조(이용료) ③ 시장은 운수종사자 및 그 직계가족의 이용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이용료의 50% 범위안에서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할인의 범위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교육원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 또는 프로그램별로 정하며,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는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결혼을 위하여 예식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강당 대여
2. 운수종사자들로 구성된 친목단체 또는 동호회의 회의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강의실 또는 세미나실 대여
3. 사우나실, 체력단련실, 이·미용실 이용
4. 교양·취미활동 등의 프로그램 이용

**[별첨]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프로그램 할인현황**

구 분	할인내용
헬스클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수종사자 1개월 기준 50%할인 35,000원</li> <li>· 경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1개월 기준 15%할인 60,000원</li> <li>· 학생할인(초· 중· 고등학생 대상) 1개월 기준 15%할인 60,000원</li> <li>· 헬스클럽 일일이용권 운수종사자 50%할인 4,000원</li> </ul>
에어로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수종사자(가족) 1개월 기준 50%할인 30,000원</li> </ul>
요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수종사자(가족) 1개월 기준 50%할인 20,000원</li> <li>· 헬스·에어로빅 회원 1개월 기준 25%할인 30,000원</li> </ul>
벨리댄스	
댄스스포츠	
라인댄스	
사우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수종사자 50%할인 2,500원 (본인·직계가족)</li> <li>·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20%할인 4,000원 (본인)</li> <li>· 교양강좌회원 40%할인 3,000원 (본인)</li> <li>· 소인(만2세~6세이하) 40%할인 3,000원</li> </ul>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94
----------	-----

제출년월일 : 2019년 3월 29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교통문화교육원의 이용료를 감면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교통문화교육원의 이용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안 제9조제5항)
- 나. 둘 이상의 이용료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함(안 제9조제6항)
- 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등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19. 2. 21. ~ 3. 13.)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⑥ 둘 이상의 이용료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이용료) ① 교육원 이용자는 시장이 정하여 게시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시장은 운수종사자 및 그 직계 가족의 이용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이용료의 50% 범위 안에서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할인의 범위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교육원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 또는 프로그램별로 정하며,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는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결혼을 위하여 예식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강당 대여
				2. 운수종사자들로 구성된 친목단체 또는 동호회의 회의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강의실 또는 세미나실 대여
				3. 사우나실, 체력단련실, 이·미용실 이용
				4. 교양·취미활동 등의 프로그램 이용
제9조(이용료) ① 교육원 이용자는 시장이 정하여 게시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시장은 운수종사자 및 그 직계 가족의 이용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이용료의 50% 범위 안에서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할인의 범위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교육원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 또는 프로그램별로 정하며,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는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결혼을 위하여 예식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강당 대여
				2. 운수종사자들로 구성된 친목단체 또는 동호회의 회의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강의실 또는 세미나실 대여
				3. 사우나실, 체력단련실, 이·미용실 이용
				4. 교양·취미활동 등의 프로그램 이용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교통문화교육원 복지시설 이용자에게 제로페이 결제시 이용료 감면혜택을 부여하여 이용료 수입 감소가 예상되나 연평균 1억원 미만임.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 4. 작성자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유 은 녕 (02-2133-2327)